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제2조의2부터6를 제2조의3부터7로 이동한다.

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현황 관리 등)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당해 연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6항의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외의 여타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사항, 점검시기, 보고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4 제5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관리방안 : 사후관리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최신기술 및 전문 장비·인력 활용방안, 사전 예방적 조치 활동, 성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
2. 점검사항 :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설치된 설비의 유지 상태 등
3. 점검방법 : 현장조사, 유선조사, 서면조사, 전문기관 위탁조사 등
4.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 제2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센터에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를 법 제27조 제1항의 보급사업 실시에 반영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표

1. 기본정보

설비종류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연료전지 ☐ 기타()
사후관리일자	
소유자(연락처)	
실사용자(연락처)	

2. 설비정보

설치연도	
설치위치	☐ 옥외 ☐ 옥상 ☐ 보일러실 ☐ 주차장 ☐ 건물일체형(BIPV) ☐ 기타()
설치장소(주소)	
설치용량	
주요 부품	주요부품1 (수량 : 개)
	주요부품2 (수량 : 개)
	주요부품3 (수량 : 개)
	주요부품4 (수량 : 개)

3. 점검사항 및 가동상태

점검사항	설비의 가동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상태, 전선피복 등 전력시설물 설치 상태, 설치된 설비의 지반 및 배수시설 등 적정 유지 상태 등
가동상태	☐ 정상가동 ☐ 가동중단(고장, 기타사유) ☐ 폐기처분
점검결과	
비 고	

※ 비교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 (서명 또는 인)

시행기관의 장 귀하

시행기관의 장 또는 센터의 장

우 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에 관한 사항(년도)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총괄 현황(개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계

2. (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현황(개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계

3. (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개소)

구 분	정상가동	가동중단		폐기처분	비 고
		고 장	기 타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연료전지					
기 타					
계					

※ 기재요령

1. 2.(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현황(개소) 및 3.(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개소)에는 대상 설비의 전체 개소수를 적고 시공사(3년 이내 설비) 사후관리 개소수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2. 3.(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개소)의 비고란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현황 관리 등) 영</u> <u>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u> <u>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당해</u> <u>연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u> <u>및 이용 현황을 별지 제11호서</u> <u>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u> <u>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u> <u>센터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u> <u>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u> <u>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기존 제2조의2~6은 제2조의3~7</u> <u>로 조문 이동)</u>
<u><신 설></u>	<u>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u> <u>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u> <u>제6항의 임대 또는 처분할 수</u> <u>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u> <u>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부</u> <u>동산과 종물(從物)로 하되, 그</u> <u>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u> <u>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외의 여</u> <u>타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u> <u>은 재산에 한해 「국유재산법」</u> <u>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u> <u>의 장등이 정한다.</u>

<신 설>

<신 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사항, 점검시기, 보고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4 제5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관리방안 : 사후관리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최신기술 및 전문 장비·인력 활용방안, 사전 예방적 조치 활동, 성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

2. 점검사항 :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설치된 설비의 유지 상태 등

3. 점검방법 : 현장조사, 유선조사, 서면조사, 전문기관 위탁조

사 등

4.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 제2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센터에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를 법 제27조 제1항의 보급사업 실시에 반영할 수 있다.